

부속서 II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파나마 유보목록은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파나마의 기존 조치의 유보목록을 규정한다.

- 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 나. 제11.3조(최혜국 대우)
- 다.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마.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항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의 유보목록에 대한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1항에 기재된 유보목록의 항목을 해석하는 경우, 비합치 조치 목록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제11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 가. 조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 또는 제11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파나마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서비스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52호(2008.4.30) 제53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의 파나마 지점은 최소 2명의 일반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2명 모두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또한 2명의 대리인 중 1명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사 보험사의 관리자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국경 간 무역(제11.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12호(2012) 제56조, 제58조, 제153조, 제166조, 제177조 및 제181조
유보내용	<p>파나마 공화국에 주소지를 둔 인은 파나마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보험사에게 파나마에 소재한 모든 재산 및 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험증권이 파나마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보험사로 부터 취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보험재보험감독원은 그 보험증권을 해외에서 취득하도록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부에 그 승인에 대하여 기록할 것이다.</p> <p>파나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한국 국민 및 한국 기업이 부속서 11-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부속서 제1항다호는 파나마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그 부속서 제1항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p> <p>부속서 I의 파나마 유보목록 1번 항목에 명시된 개인만이 파나마에서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p> <p>그러한 기업의 법적 대리인은 파나마에서 보험중개인으로 면허를 취득한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p>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재보험 또는 인수업체 재보험 관리자 재보험 중개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63호(1996.9.19) 제10조
유보내용	재보험업에 종사하도록 승인 받은 회사는 최소 2명의 일반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2명 모두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또한, 2명의 대리인 중 1명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은행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령 제90-LEG호(2002.4.9) 제4조 법률 제56호(1995.12.27) 제111조
유보내용	파나마에서 설립되고 보험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 및 은행만이, 각 경우에 맞게, 정부조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보증증서 또는 은행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